제35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서초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34호)]

2026. 10.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4호		
의 안 명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	**제출연월일**	2026. 9. 21.
위 원 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민 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의결 요청 사항 :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2.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다. 출연목적

-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네트워크 포럼 강화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 기여
-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충을 통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

라. 출연금 및 산출내역

- 출 연 금 : 35,448천원
- 산출내역 :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354,477,188천원)의 1만분의 1.0

※ 산출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마. 우리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최근5년)

(단위: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5,067	40,369	42,110	38,924	33,461

3. 관련규정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Ⅱ 검토의견

▣ 출연 동의안의 제출 배경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앞서 미리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 법적 검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제2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1)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약을 정한다. <신설 2025.4.1>

1. 출자·출연 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출연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연하여 해당 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는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세 분야의 공동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함.

○ 나아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시행하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함.

○ 그러나 우리 구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

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2025.4.1>

⑤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1>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우리 구는 「202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편성목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할 예정임.

○ 2027년 본예산에 편성될 출연금 추계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후단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2]제1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보통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구세분)을 말함.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된 2027년 우리 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은 35,448천원임.

2)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2026. 2. 5.>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출식

⇒ (352,122,636,870원 + 2,354,551,280원) x 0.0001 = **35,447,719원**

▸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352,122,636,870원

(등록면허세 44,234,360,290원 + 재산세 302,323,418,230원 + 지방소비세 5,564,858,350원 = 352,122,636,870원)

▸ 지난년도 보통세 수입: 2,354,551,280원

◈ 지난 5년간 서초구의 연도별 출연금 내역

(단위: 천원)

연도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금액	33,461	38,924	42,110	40,369	35,067

○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3월 31일까지 출연해야 하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서초구 지원 현황

○ 소송 8건 등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을 지원함.

○ 지방세 법령정보 DB 구축자료(https://www.olta.re.kr)의 이용을 통해 최신 판례와 사례 자료를 검색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그 밖에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제공받음.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15명의 공무원이 지방세 전문교육을 수료하였음.

○ 그 외 오피스텔 기준시가 등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 현황

◈ 설립목적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및 지방재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연구하고, 지역의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지역주민 이해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2011년 2월 설립등기를 하고, 2011년 4월 개원한 연구기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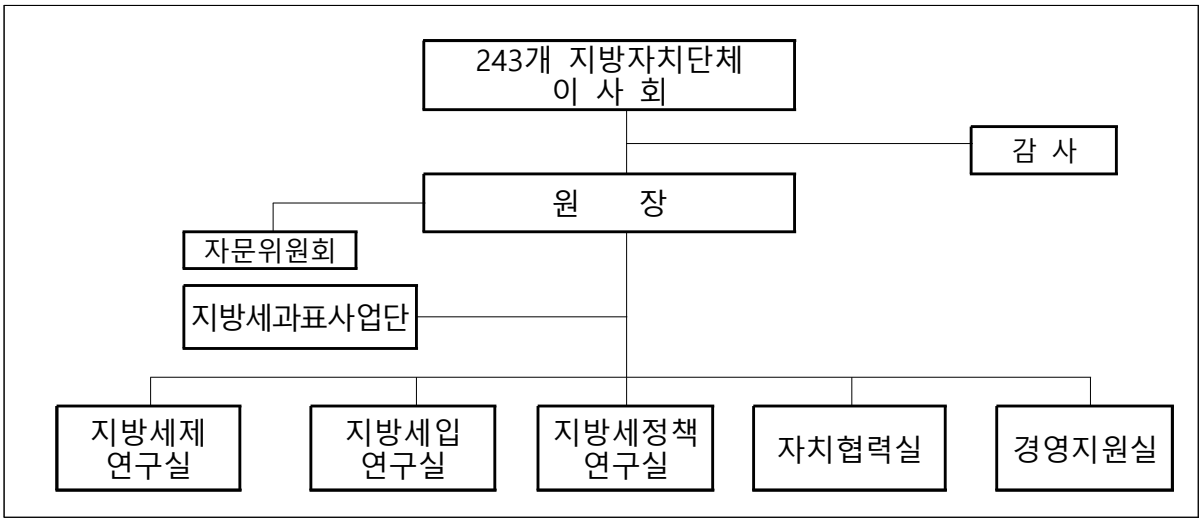
◈ 기관 현황

○ 총 인원: 91명(육아휴직 9명 포함)

(2026. 8. 기준)

구 분	계	원 장	연구관련직				사무직 시설직
			연구위원직	연구원직	조사분석직	전문직 등	
정 원	78명	1명	24명	18명	8명	10명	17명
현 원	61명	1명	16명	10명	8명	9명	17명
총인원	**91명**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명)					

○ 조직현황 : 5실 1사업단



○ 예산: 172.5억원(2026년도 본예산 기준)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출연금	수탁 등	사업비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등
104.7 (61%)	67.8 (39%)	92.4 (54%)	60.8 (35%)	16.0 (9%)	2.3 (1%)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 사업추진 현황

1 연구사업 수행

【 2026년 중점 연구방향 】

- 「지방전환(LX) 시대 선도」 비전 및 중점 연구 방향 수립
-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제 선점, 지방정부의 정책수요에 상시대응하는 위상 재정립

① **균형성장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소멸 및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지역산업의 인구유입 및 지방세수 영향 분석」,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② **자치분권 및 지역주도 성장기반 강화**: 「공정 성장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개혁 과제-지방세·지방재정을 중심으로」, 「재정분권 3단계 추진방안 연구」 등

③ **세원관리 강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광역자치단체 체납징수 조직역량 강화」,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실태 분석 및 고도화 방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실효성 증대 방안」,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에 대한 개선방안」 등

④ **주택시장 안정성 확대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시범 연구사업」,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체계 이원화 방안 연구」,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 세제지원 방안

연구」 등

❍ 지방소멸 가속화, 재정분권의 정체, 광역 행정통합 본격화, 고향사랑기부제·지역금융 등 새로운 자주재원 의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면서 지방행정·세제·재정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함. 이에 디지털 전환(DX)에 견줄 “지방전환(LX)”을 기관 정체성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지방전환(LX) 시대 선도 비전 및 중점 연구 방향의 수립을 위한 총 12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구분	합계	기본	기획	정책 (제도개선)	수탁
2026년	**124**	**9**	**10**	**102**	**3**
2025년	130	12	8	103	7
2024년	130	14	11	90	15
2023년	120	5	14	96	5

❍ 나아가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주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현안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KILF FOCUS를 매주 1회 웹진 형태로 발간하고 있음.

❍ 아울러 보도자료 15건 배포, 언론보도 77건, 언론 기고·인터뷰 및 고향사랑기부대상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지방재정 의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방의회(서울·경기)·지방정부·유관 학(협)회와 공동으로 현안 대응 및 성과 확산 학술행사 4건을 개최하여 지방정부와의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위원회 정책TF 참여, 분과별 자문위원회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 8건 체결 등을 통해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운영하고, LX 4대 핵심영역과 연계하여 고향사랑기부대상 및 고향사랑페스타 참여, 관련 연구페이퍼 발간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논의를 선도함.

②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중점 추진사항>

① 과세표준 품질관리 기준 수립 등을 통한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 지원

-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및 관리지표 설정, 과세표준 관리지표의 개념 정립 및 산식 마련, 관리기준 활용 및 정책 활용 방안 제시 등 과세표준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시가표준액 산정의 정확성과 지역별·과세 대상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함.

② 데이터 기반 조사·산정체계 구축을 통한 과표 운영의 체계화

- 지방세 과표 제도의 품질 향상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과표정보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지방세과표정보시스템(LTBIS) 기반의 데이터 중심 조사·산정 체계를 운영하여 과표 산정의 객관성·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과표관리 업무를 IT 기반으로 표준화·체계화하고 데이터 연계·축적을 통해 과표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

③ 시가표준액 권리구제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납세자 권리의식 강화와 지방세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고 과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견청취 제도 개선 등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에서의 불복 절차 정비

【 2026년 주요성과 】

구분	25년 실적	26년 목표	전년대비	26년 주요성과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233,878건	242,000건	+8,122건	
오피스텔	25,618건	26,000건	+382건	과세단위별 대표성 검증
상업용 부동산	72,815건	80,000건	+7,185건	수익가격 산정 확대
미공시공동주택	4,467건	5,000건	+533건	신축 대단지 가격 검증
기타물건	130,978건	131,000건	+22건	어업권 등 현장조사 확대
과표 연구	10건	11건	+1건	제도개선 연계 과제 수행
과표 관리지표	품질관리 필요성 확인	관리지표 개발 추진	체계화	시가표준액 적정성·균형성 진단기반 마련
데이터 기반 과표 관리	-	LTBIS 고도화	기능 고도화	조사·산정·검증 등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성과>

▸ 정책 반영을 전제로 한 대안 중심의 실천적 과표 연구 수행

- 과세표준 품질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등 신뢰세정 구현 방안을 연구하고, 데이터센터 등 특수건축물의 시가 반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기반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수행함.

<지방정부 현장 및 과표업무 지원 성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제도 운영 지원

- ’26.1~6월 지방정부 자체 조사가 곤란한 건에 대해 조사가격 산정·검증을 지원하고, 조사가격 산정 가이드 및 거래사례 등 필요 자료를 제공함.

▸ 실무 적용상 문제점 등 확인하고 의견 수렴하는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전국 지방정부 합동 토론회(4월, 10월)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

▸ 행안부·지방정부·연구원 공동 현장조사 및 과표컨설팅 추진

- 지방정부 현장방문 및 컨설팅을 통해 과표 관련 현안·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차전용 빌딩·높이증축 축사·송전철탑·특수잔교 등 기존 산정체계의 적용이 어려운 과세물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제도개선과 연계 추진

▸ 기타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관련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

- 전문가·실무(공무원) 자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전문성 강화 지원, 학술단체 협업, 과표법령집 발간 배포 등 과표제도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적극 지원

3 지방세 교육 사업

①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운영

- 전국 유일의 지방세교육기관으로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평가를 반영한 인기과정 선발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과정별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6. 7월말 기준 지방세교육을 총 70회 실시하여 5,58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각 과정별 교육만족도는 평균 94.1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e러닝교육(https://edu.kilf.re.kr)은 1,556명이 참여하였음.

【 '26. 7월말 기준 지방세 교육 추진실적 】

교 육 형 식	교 육 회 수(회)	교 육 인 원(명)
합 계	70	5,589
온라인 교육	12	2,317
현장 교육	14	784
찾아가는 지방세교육	2	81
특별 교육	3	87
e러닝 교육	**37**	**1,556**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도 교육	2	480

②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체납기본소양교육" 추진

- '26년 최초 도입된 전국 규모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체납관리단 발대식과 연계한 지역 출장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6. 7월부터 8월까지 총 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813명이 참석함.

③ '26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지방세 표준교재」 발간·배포

- '26년 지방세 4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본법, 징수법,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기타세목, 특례제한법 등 7권으로 구성된 실무중심 지방세 표준교재를 제작하고, 법 개정 후 3개월간 집중 집필기간을 운영하여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안부 지방세 담당자를 포함한 감수활동을 통해 집필내용의 완성도를 제고함.
- 표준교재 7권을 각 260부씩 제작하여 지방정부 세정부서에 우편 배포하여 지방세 담당자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④ 지방세 우수공무원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 기회 제공

- 업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외 선진 지방세제도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선진 지방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접목방안 등을 연구하도록 지원하였으며, '26년 상반기 지방정부 15명 및 연구원 2명 등

총 17명의 연수를 완료함.

'26년 해외비교연수 계획(추진결과)

연도	차수	연수일자	연수국가	인원(명)
2026	1차	4.19.~4.25.	튀르키예	17
	2차	10.24.~10.31.	이탈리아	미정

④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① 재정분권 기획부 및 지방세정발전위원회 구성(신설)

- 지방세무직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세무사 시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6. 6월 지방세정발전위원회(13명)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 발전 관련 안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지방세 성실신고제도 도입에 대비한 지방세 전문 행정사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대안 중 하나로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대체 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방세 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도모하고자 함.

②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DB구축 및 실무자료 제공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 관련 판례·해석, 법령정보 등 최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구축하고, 공무원마당의 전문가 상담·질의응답·실무자료 게시판 및 자료마당의 업무매뉴얼·길라잡이·교육교재·쟁송사례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현장 실무를 지원함.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판례·결정례·해석 등 법령정보 총 65,099건을 구축하고, 공무원마당의 질의응답·전문가 상담 등을 활성화하

여 총 84,334건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최신 지방세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신뢰세정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26. 6월말 기준 법령정보시스템에 총 149,433건의 정보를 구축함.

판례와 해석 구축자료							
구 분	합 계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결정례	감사원심사 결정례	행안부 유권해석
정보제공 (건)	**65,099**	215	31,408	1,059	1,059	1,995	4,582

지방세 공무원마당 구축자료				
구 분	합 계	질의 응답	지방세상담	실무자료 등
구축건수	**84,334**	51,796	18,151	14,387

③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신규)

- ’14년 구축된 법령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추가개발에 한계가 있고 사용자의 기능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AI 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검색기능·속도 개선(62%), 공무원마당 활성화(14%), 홈페이지 개편(6%)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함.
- ’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총 936,1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착수보고(4월), 지자체 설문조사(5월), 중간보고(9월), 시범운영(11월) 등의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능형 검색체계 도입을 통한 검색속도 및 연관검색 기능 강화, 사용자 중심의 UI/UX 구축 및 오픈API 연계 등 이용편의성을 향상하여 AI 기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지방세 실무현장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④ 지방세 입금 비용 지원

- 전국 지방세입금 신용카드 수납처리 비용을 연 9억원 지원하여, 자치단체가 매월 건당 80원씩 금감원에 정산·납부하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연구원에서 일괄 납부함.
- '20년부터 수납처리 비용을 연 9억원으로 동결하여 연구원에서 일괄 정산·납부하고 있으며, '26년분은 상반기까지 4.5억원을 납부하여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납처리 비용 누적 38.9억원을 절감하였음.

연도별 신용카드 수납처리 비용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7월
전국 신용카드 수수료 (건당 80원 기준) ⓐ	**102.7**	10.9	12.1	13.1	13.9	15.9	17.9	18.9
연구원 납부 금액 ⓑ	**63.8**	9.8	9	9	9	9	9	9
예산 절감 효과 ⓐ - ⓑ	**38.9**	**1.1**	**3.1**	**4.1**	**4.9**	**6.9**	**8.9**	**9.9**

⑤ 지방세 홍보자료 제작 지원

- 2026년 개정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세 길라잡이」 1,000부와 외국인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4개 국어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배부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지방소득세 등 정기분 4개 세목의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여 정기분 세목의 부과·징수기간 중 홍보영상 활용을 통한 납세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를 도모함.

⑥ 지방세 불복사건 관련 고품질의 자문의견서 제공·지원

- 사건별 쟁점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품격·맞춤형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변호사 2인 및 외부위원 56인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26. 7월말까지 지방정부 요청 자문의견서 105건(620억원)을 지원함.
-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해 주요 쟁점과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지원하는 등 지방세 불복사건 추진에 실질적인 Control-Tower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6. 7월말 기준 주요 쟁점인 도시지역 내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여부 등 총 23건에 대해 공동대응을 추진하였으며, 자문지원 모니터링 결과 불복쟁송 자문서비스 만족도 98.4점을 기록함.

⑦ 지방세 불복사건 결과에 따른 지방세 제도개선 환류 추진

- 불복사건 결정과 관련하여 법령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합동회의를 3회 개최함.

⑧ 세외수입 불복청구에 대한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신규)

- 세외수입 관련 기획소송 확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대응논리를 갖춘 자문의견서를 지원하고, 도시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함.

⑨ 소송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확정·종결된 판례 및 자문지원 사례를 DB로 구축·공유하여 지방정부의 실무 활용을 지원하고, '25년 종결된 사건 자문지원 사례 32건과 하급심 판례 209건을 구축하는 한편, 최근 확정된 주요 판례를 '현안대응센터 판례이슈'를 통해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공유함.

⑩ 자치단체 상호교류를 위한 공동연찬회 지원

- 기초-광역 및 기초-기초 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를 지원하고, 연찬회를 활용하여 지방세 우수사례의 전파·표준화 및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한편, '26. 7월말까지 1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27회의 연찬회 개최를 지원하고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함.

'26.7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공동연찬회 지원 현황

구분	개최횟수(건)	배정지원금(원)	사용지원금(원)	예산잔액(원)
합계	27	100,600,001	69,855,900	30,744,101
서울	3	10,964,959	10,794,000	170,959
부산	0	6,179,098	0	6,179,098
대구	1	5,352,254	4,175,000	1,177,254
인천	2	5,367,623	5,270,000	97,623
광주	1	4,516,189	4,407,200	108,989
대전	1	4,774,385	4,768,000	6,385
울산	1	4,608,402	2,400,000	2,208,402
세종	0	4,021,311	0	4,021,311
경기	3	10,835,861	4,643,000	6,192,861
강원	1	5,287,705	3,000,000	2,287,705
충북	0	5,189,344	0	5189344
충남	2	5,592,008	5,592,000	8
전북	1	5,238,525	2,311,000	2,927,525
전남	5	5,226,230	5,200,000	26,230
경북	4	6,590,984	6,590,000	984
경남	1	6,529,508	6,500,000	29,508
제주	1	4,325,615	4,205,700	119,915

⑪ Bottom-Up 제도개선 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

- 실무자가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Bottom-Up 방식의 상향식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 연구동아리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실무중심 연구역량 강화 및 조직 내 학습문화 정착을 도모함.
- '26. 4월부터 8월까지 원주·춘천·창녕·함안·광주 동구·북구·광산구·대구 중구·대전 본청·동구·유성·부산 본청·중구·서구·동구·영도·부산진구·북구·해운대·사하·금정·수영·사상·서울 본청·강남·금천·동작·마포·세종·인천 서구·전북 본청·군산·전주·충남 보령·서산·충북 단양 등 총 36개 지방정부에서 44개 연구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26년 제안 연구과제 중 우수 과제 11팀을 선정하여 10월 중 시상할 예정임.

◈ 2027년 사업 추진 방향

○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 재정분권 로드맵과 연계한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제도 개편, 국세·지방세 세원구조 개선 및 신세원 제도화 등을 추진함.
-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세체계를 재설계하고, AI 산업 확대 및 기술전환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세제 구축방안과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방세제 대응방안 등을 연구함.

○ 지역통합·초광역 지방정부 세제·재정 설계

- 지역통합에 따른 지방세입 구조변화를 연구하고, 지역통합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표준 모형을 개발함.

- 행정통합에 대응한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간 재정관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세 정책과 세정 운영방안을 연구함.

○ **지역금융·지역콘텐츠 연계 재정기반 구축**

-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균형발전 인지예산 제도 도입을 연구하고, 재정분권 수준 측정을 위한 세입지표를 개발·분석함.
- 지방정부 중심의 재정운용체계 고도화를 통한 지역자산 기반 자주재원 모델을 연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분권 강화 정책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법제화를 추진함.

○ **고향사랑기부제 고도화에 관한 연구**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방안과 기업형·재외동포형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세액공제 한도 확대 및 기업형·재외동포형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추진함.

○ **(확대) AI 활용 지방세·재정시스템 고도화 지원**

- AI기반 세수추계 시스템 구축 기초 연구, 지방세제·재정 분야 연구성과 통합 DB 구축 및 활용 목적 AI인프라 구축 연구

Ⅲ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

세연구원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과 기초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으로,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통해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구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초구 2027년도 본예산에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할 예정임.

○ 2027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후단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35,448천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이에 따라 해당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므로 법정 기한 내 적기 이행을 위해서는 해당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초구는 2026년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용역 과제 의뢰,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지원,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 및 각종 질의·응답 회신, 지방세 공무원 전문교육 15명 수료,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등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았음. 2027년에도 지방세연구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능력 강화 및 주요 판례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지방세 관련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2027년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2. 관계법령

붙임 1 2027년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① '25년 결산 지방세	2025년 결산 보통세			2027년 출연금		
		② 소계 (ⓐ+ⓑ)	③ 현년도 ⓐ	④ 과년도 ⓑ	⑤ 2026년 정산액	⑥2027년 출연분 (②*1.0/10000)	⑦ 2027년 출연금 (⑦=⑥+⑤)
전국합계	124,000,048,000	111,224,880,386	110,030,617,675	1,194,262,710	-116	11,122,480	11,122,362
서울시 소계	33,901,396,908	28,423,139,431	28,216,175,809	206,963,622	-	2,842,313	2,842,312
서울시 본청	29,444,961,657	23,966,704,180	23,783,313,087	183,391,093	-	2,396,670	2,396,670
종로구	155,682,809	155,682,809	154,564,115	1,118,694	-	15,568	15,568
중구	200,631,998	200,631,998	199,926,723	705,275	-	20,063	20,063
용산구	190,721,803	190,721,803	189,298,188	1,423,615	-	19,073	19,073
성동구	169,162,755	169,162,755	168,364,740	798,015	-	16,916	16,916
광진구	135,902,600	135,902,600	135,493,492	409,108	-	13,590	13,590
동대문구	130,227,558	130,227,558	129,745,054	482,504	-	13,023	13,023
중랑구	111,068,005	111,068,005	110,663,888	404,117	-	11,106	11,106
성북구	129,040,621	129,040,621	128,346,906	693,715	-	12,904	12,904
강북구	103,803,706	103,803,706	103,530,469	273,237	-	10,380	10,380
도봉구	104,108,188	104,108,188	103,924,274	183,914	-	10,411	10,411
노원구	126,834,461	126,834,461	126,296,358	538,103	-	12,683	12,683
은평구	124,801,221	124,801,221	124,327,867	473,354	-	12,480	12,480
서대문구	123,439,615	123,439,615	122,803,034	636,581	-	12,344	12,344
마포구	178,508,693	178,508,693	177,492,480	1,016,213	-	17,851	17,851
양천구	148,754,079	148,754,079	148,283,846	470,233	-	14,875	14,875
강서구	183,872,836	183,872,836	183,043,619	829,217	-	18,387	18,387
구로구	133,273,790	133,273,790	132,594,730	679,060	-	13,327	13,327
금천구	116,763,576	116,763,576	116,233,276	530,300	-	11,676	11,676
영등포구	216,785,178	216,785,178	215,860,718	924,460	-	21,679	21,679
동작구	137,747,805	137,747,805	137,141,907	605,898	-	13,775	13,775
관악구	125,219,050	125,219,050	124,761,599	457,451	-	12,522	12,522
서초구	**354,477,188**	**354,477,188**	**352,122,637**	**2,354,551**	**-**	**35,448**	**35,448**
강남구	594,388,541	594,388,541	589,803,526	4,585,015	-	59,439	59,439
송파구	289,197,393	289,197,393	287,539,157	1,658,236	-	28,920	28,920
강동구	172,021,782	172,021,782	170,700,119	1,321,663	-	17,202	17,202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 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